

현금카드 회원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2-06-08	2022-04-15	판매중	(적용)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해당사항 없음		

3. 담당부서명: 운영관리부

현금카드 회원약관

제1조(회원)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에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함)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발급 받거나 현금카드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카드의 발급)

카드는 회원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중 1계좌를 주계좌로 하고 나머지 계좌를 연결계좌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카드의 이용)

- ① 카드는 은행 본지점 및 CD공동온라인망 참가은행(이하 '참가은행'이라 한다)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 없이 거래예금의 입금 또는 인출,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기타 은행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② 카드 거래 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 ③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행 영업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제4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계좌의 해지·유효기간 만료·갱신·대체·재발급 카드의 경우 구 카드

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① PIN은 IC Chip이 내장된 카드의 접근 제어장치로서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6자리의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복수계좌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필요로 한다.
- ② 회원이 KB국민체크카드의 PIN을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또는 삼성체크카드의 PIN을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일자에 관계없이 오류횟수가 누적되어 카드 접근이 불가하다. 이의 해제를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해 PIN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은행은 회원으로부터 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 등에 게시한다.

제7조(비밀번호)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양자를 " 자동화기기 " 라 함)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카드이용의 제한)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번호의 오류입력 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제한 계좌
5.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잔액 포함)부족
6.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제9조(자동화기기 이용)

- ① 제1항의 거래 시 마다 은행은 자동화기기에 의해 소정의 거래 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회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2항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원의 결제계좌의 지급거래가 발생한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1부를 지급청구서 또는 기명날인된 수표로 갈음하여,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교부한다.
- ③ 자동화기기 이용시간, 인출(이체)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 횟수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 ④ 최근 1년간 CD/ATM을 이용하여 이체실적이 없는 회원의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다만,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해 회원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체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⑥ 기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기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카드의 사고신고)

- ① 회원은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시에는 은행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원 본인이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

- ① 회원은 제9조 제1항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은 사고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1의 경우 회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1. 회원이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2.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②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 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원 이외의 제3자가 카드를 위변조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비밀번호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은행이 서면에 의한 신고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약관변경 승인 등)

- ①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 회원이 신고한 주소로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포함)통지를 하기로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

- ② 제①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①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게시 통지한다.
- ③ 제②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은행 예금거래 기본 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CD 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